

金融先物 및 옵션去來의 會計處理에 관한 研究

李喜均
會計學科

<要 約>

본 연구는 金融先物 및 옵션去來에 관해 회계상 제기될 문제와 회계처리방법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文獻調査를 통해 금융선물 및 옵션거래의 특성을 파악하고, 금융선물 및 옵션거래에 대한 미국, 일본 및 한국의 關聯會計處理基準을 비교·검토한다. 그리고 국내기업들의 금융선물 및 옵션거래의 現狀과 展望에 비추어 기업회계기준의 한계와 관련회계처리방법의 規程化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또한 기업회계기준은 금융선물 및 옵션거래의 理論的·制度的 특성에 관한 先行研究와 去來類型別 충분한 事例研究를 통해 회계처리방법을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을 제안한다.

A Study on the Accounting Methods for the Financial Futures and Option Transactions

Lee, Hi-Kyo
Dept. of Accounting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problems to be raised on the accounting procedures and methods for the financial futures and option transactions. This study captur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nancial futures and option transactions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s, and examines and compares the related accounting standards of U.S., Japan and Korea in these transactions. And in the light of the conditions and prospects of the financial futures and option transactions in Korea, it provides the limits of accounting standards, the necessities of the related accounting methods, and the future legisl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about the financial futures and option transactions.

1. 序 論

金融先物去來는 오랜 역사를 가진 商品先物去來를 금융상품에 적용시킨 혁신적인 금융기법으로서 미국에서 70년대에 들어와 거래가 시작된 후 여러 나라에 파급되어, 이제는 國際金融資本市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금융상품이 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1970년대 초 이후 國際通貨制度의 固定換率制度가 붕괴되고 變動換率制度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자율과 환율의 엄청난 상승을 가져왔으며, 기업경영자들은 이들 변화로부터 기업의 위험노출을 관리할 금융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80년대 이후 통신기술의 발달과 컴퓨터의 이용은 國際金融市場의 沉世界的 統合化 현상을 가속화시켰으며, 또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감에 따라 각국은 새로운 金融商品을 개발하고, 동시에 다양한 金融技法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는 金融革新이라 할 선물환, 스왑, 선물, 옵션 등의 혁신적 금융상품들과 거래들을 보편화시켰지만, 현재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즉, 기업들은 금융선물 및 옵션거래를 통해 換率 및 利子率變動危險으로부터 기업의 예상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또는 투기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들 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해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金融先物市場이 선진화된 국가들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對外去來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국제간 결제통화로서 원화가 아닌 주요국의 통화로 결제해야 하는 국내기업들로서는 換率과 利子率變動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할 어려움이 있는 한편, 동일한 회계처리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國內金融先物市場이 아직 개설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 해외선물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헤지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 기업회계기준 및 예규만으로는 금융선물 및 옵션거래에 대한 이해부족과 기업의 수용태세가 미흡한 상태에서 효율적인 危險管理手段으로서의 활용이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효율적인 제도의 활용을 위해서는 기업행동의 규범이 되는 회계처리의 중요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선물과 옵션거래에 관해 회계상 제기되는 문제는 ①금융선물과 옵션계약의 재무제표 인식방법과 인식시점, ②금융선물과 옵션의 최초 측정금액, ③손익의 인식과 보고방법, ④최초인식 이후의 가격변동의 측정방법과 미실현손익의 보고방법, ⑤정산일에 금융선물과 옵션의 제거와 실현손익의 보고방법, ⑥재무제표 공시 등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文獻調査를 통해 금융선물·옵션거래의 특성을 파악하고, 특히 通貨 및 利子率의 금융선물 및 옵션거래에 대한 미국, 일본 및 한국의 關聯會計處理規程·指針·意見·例規들을 비교·검토하여 주요 회계상 문제들과 회계처리방법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현재 또는 향후 국내기업들의 금융선물 및 옵션거래의 현상과 전망을 고려할 때, 기업회계기준의 한계와 향후 보완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실무상 발생될 문제의 事前對備로서 관련회계처리방법을 규정화 내지 제도화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2. 金融先物去來와 옵션去來

(1) 金融先物 및 옵션去來의 性格

先物去來에는 거래되는 대상에 따라 商品先物(commodity futures)과 金融先物(financial futures)의 두 종류가 있으며, 금융선물거래는 선물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金利先物(interest rate futures), 通貨先物(foreign exchange futures), 株價指數先物(stock index futures)과 先物 및 現物에 대한 금융옵션(financial options)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조직화된 거래소를 통한 상품선물은 1840년대에 설립된 Chicago Board of Trade(CBOT)에서 1860년부터 거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금융선물거래는 1976년 1월 Chicago Mercantile Exchange(CME)에서 최초로 금리선물을 거래하기 시작하였으며, 옵션거래는 1982년 12월 Philadelphia Stock Exchange(PHLX)에서 통화옵션이 처음 거래되기 시작하였다.¹⁾

이와 같이 금융선물과 옵션거래가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된 역사는 아니지만, 금융선물거래가 도입된 이후로 환율 및 금리변동 등의 金融環境變化에 힘입어 80년대에 들어와 급속히 발전하여 새로운 금융상품으로서 위치를 차지하게 된 데에는 금융선물거래와 옵션거래가 지닌 경제적 특성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 金融先物去來의 特徵

금융선물거래(financial futures transaction)는 외환이나 유가증권 등의 금융상품에 대한 선물거래로서 계약에 의하여 미래의 일정 시점에 특정 금융상품을 미리 약정된 조건으로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現物決済 또는 反對賣買(reversing trade)를 통하여 선물계약을 정산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선물거래는 선물환거래와 같이 미래의 인도시점에서 금융상품의 인수·인도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현물거래와 반대되는 선물포지션을 택하여 인도일 이전에 정산함으로써 환율, 이자율 및 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징(hedging)을 목적으로 거래를 한다. 또한 금융선물거래는 현물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선물포지션을 인도일 이전에 반대매매를 통해 계약시 先物價格과 계약만료시의 市場價格과의 차액을 얻기 위한 투기목적의 거래를 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의 外國換管理規程은 금융선물거래를 외화자산 또는 부채의 환율·이자율 또는 주가변동위험의 방지와 외화차입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 이용할 수 있으며, 거래대상 통화간의 금리차등을 이용한 자금조성 및 금융공여 또는 금융비용의 보상 등의 목적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²⁾

2) 옵션거래의 特징

1) 姜鏞上, 國제금융시장론, 법문사, 1990.

2) 재무부, 외국환관리규정, 제13-3조, 금융선물거래 등의 정의, 1992. 9. 1

金融先物의 옵션대상은 통화옵션(currency option)과 이자율옵션(interst rate option) 등이 있다. 옵션(option)은 豫定價格으로 정해진 기간내에 특정 자산을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옵션보유자(option holder/buyer)에게 부여되는 계약을 말하며, 콜옵션(call option)과 풋옵션(put option)으로 분류된다. 옵션의 종류에는 그 기본형태인 콜옵션과 풋옵션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창출될 수 있으며, 특히 미래의 불확실성으로부터 그 위험을 극소화하거나 또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옵션시장에서는 다양한 옵션의 복합거래가 이루어진다.

콜옵션(call option)은 옵션매입자(option buyer/holder)에게 예정된 行使價格(exercise price)으로 先物契約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지만 반드시 매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풋옵션(put option)은 옵션매입자에게 特定行使價格과 特定期日内에 先物契約을 매도할 권리를 부여하지만, 콜옵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매도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³⁾ 따라서 옵션의 매입자는 옵션의 행사기일 또는 행사기간내에 행사가격이나 이자율이 現物價格(spot price) 또는 現物利子率(spot interest rate)보다 유리한 경우에 옵션을 행사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션거래는 선물계약의 헤지기능과 투기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옵션매입자(option buyer)가 行使期間内에 권리행사를 포기할 때에는 지불한 옵션료(option premium)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반대로 옵션매도자(option writer/seller)는 계약체결시에 옵션료를 수취하며 行使期間까지 옵션매입자가 권리를 포기하든 또는 포기하지 않든 간에 수취한 옵션료는 이익이 되지만, 옵션매입자가 권리행사를 할 경우에는 行使價格과 現物價格의 차액이 수취한 옵션료를 초과한 금액만큼은 손실이 된다. 옵션매입자의 위험은 잠재적인 價格變動에 비례하게 된다.⁴⁾ 즉, 옵션매도자의 경우 옵션료를 받는 대가로 계약기간내에 언제라도 옵션매입자의 권리행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나 이자율이 불리하게 변동되는 경우 손실에 대해서는 무한대의 위험부담이 있다

(2) 金融先物去來 및 옵션去來의 機能

1) 헤지기능

옵션과 선물거래는 비슷한 헤징기능(hedging function)을 수행한다 그러나 先物去來는 선물의 매입자와 매도자는 모두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가 발생하며, 유리한 가격 또는 이자율 변동과 불리한 가격 또는 이자율변동을 모두 헤지(hedge)한다는 점에서 兩面的 헤징(two-sided hedging)이지만, 계약상 옵션은 손실위험에 대한 일방의 헤징(one-sided hedging) 거래⁵⁾이므로, 옵션과 선물거래의 위험 및 수익의 특성은 서로 다르다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위험은 기업에 현존하는 資產·負債, 確定契約 또는 豫定去來의 환율 또는 이자율의 변동으로 미래 기업손익에 영향을 미칠 敏感度를 말하므로,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헤지목적의 대상은 기업의 換率 또는 利子率危險回避에 기여해야 한다

3) Steven C. Blank, Colin A Carter and Brian H. Schmiesing, *Futures and Options Markets, Trading in Commodities and Financial*(Prentice Hall Inc., 1991 P 272

4) Ibid., P.274.

5) AICPA, Issues Paper, "Accounting for Options," March 1986, Para 65

2) 헤징거래의 대상과 헤징전략

기업은 환율 또는 이자율변동위험의 面露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헤지거래를 한다. 기업의 헤지활동은 보통 두 가지 구성요소로 되어 있다. 한 가지는 기업에 危險面露을 발생시키고 있는 헤지대상(hedged item)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위험노출을 감소시키는 헤지상품(hedging instrument)이다. 헤지란 헤지대상에서 발생할 손익이 헤지상품에서 발생할 손익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상쇄될 것이라고 기대해서 행해지는 기업행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⁶⁾

따라서 금융선물·옵션거래의 동기 및 목적은 미래 금융상품의 價格 및 利子率의 상승 또는 하락에 대비하여 금융자산을 미리 매각 또는 매입하여 둘으로써 가격상승 또는 하락에 따른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시장위험의 헤지(hedge)와 價格差益을 획득하기 위한 투기거래 또는 현물가격과 선물가격간의 차이를 이용한 裁定去來 등이 있다.

기업이 위험관리를 위한 헤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유자산·부채, 확정거래 또는 예정거래의 위험 크기와 성격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 다음에 내재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적절한 헤징대상을 선택하고 보유자산·부채, 확정거래 또는 예정거래에 대한 헤지규모, 즉 헤지비율(hedge ratio)을 결정하는 동시에 어떤 방법으로 헤징을 수행할 것인지 헤징전략을 세워야 한다.⁷⁾

3. 金融先物 및 옵션去來의 헤지회계기준

金融先物去來(financial futures transactions)와 옵션거래(option transactions)는 미래 특정시점의 환율 및 이자율 등을 현시점에서 고정시키고, 미래의 손실발생위험을 회피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財務戰略의 일종으로,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보유하게 될 자산 및 부채의 헤지, 확정계약 및 예정거래의 헤지와 투기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회계처리에서는 다소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1) 金融先物 및 옵션去來의 關聯會計處理規程

금융선물 또는 옵션계약의 체결 및 종료시점까지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회계처리문제는 재무제표상에 이들 契約內容의 認識方法과 認識時期, 評價方法, 損益의 認識方法, 헤징거래와 투기거래의 회계처리방법 그리고 재무제표의 公示方法 및 公示內容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금융선물 및 옵션거래에 관한 회계처리문제는 미국의 財務會計基準委員會(FASB)와 美國公認會計士會(AICPA)를 중심으로 연구가 행해졌다. FASB는 1981년에 FASB Statement No. 52, "外貨換算會計"(Foreign Currency Translation Accounting)를 발표하고, 외화거래 및 외화재무제표의 환산, 선물환계약과 통화선물계약에 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1984년 8월에 SFAS No. 80, "先物契約의 會計處理(accounting for futures contracts)" 기준을 발표하였다. 이 기준은 商品 및 金融先物契約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규정⁸⁾하고 있다.

6) 小宮山 賢, オプション取引のヘッジ"會計, 企業會計, Vol. 44, No. 12, 1992, P. 42.

7) 이 선 공저, 금융선물과 옵션시장의 활용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88, P. 188.

8) Paul Munter, Donald K. Cancy and Tommy Moores, "Accounting for Futures

그러나 현재 옵션거래의 회계처리를 규정하는 공식 기준은 제정된 것이 없고, 다만, SFAS No. 12, “市場性 있는 持分證券의 會計處理”(Accounting for Marketable Equity Securities)는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에 관한 특정 옵션회계에 관해 일부 지침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1986년에 AICPA는 SFAS No. 52와 No. 80의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옵션회계(Accounting for Options)에 관한 의견서(Issue Paper)를 작성하여 FASB에 제출하였다. FASB는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를 강화시키기 위해 1990년에 SFAS No 105, “簿外危險이 존재하는 금융상품과 신용위험이 존재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공시”(Disclosure of Information about Financial Instruments with Off-Balance-Sheet Risk and Financial Instruments with Concentrations of Credit Risk)기준을 발표하였다. 1991년 11월에 FASB는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문제들의 분석을 다룬 Discussion Memorandum에서 금융옵션계약의 회계처리를 논의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에 비해 금융선물거래가 늦게 도입되었으며 아직 금융선물과 옵션거래에 관해 공식 會計處理基準은 없지만, 日本公認會計士協會에 의해 1985년 10월에 공표된 「債券先物去來의 會計處理」가 있다. 그리고 기업회계심의회는 1990년 5월에 「선물·옵션거래 등의 기준에 관한 의견서에 관해서」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선물·옵션 거래의 시가정보공시와 선물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한 것이다.⁹⁾

우리나라는 1968년 7월 외국환관리규정에 처음으로 先物換制度가 명시되고, 1978년 2월 모든 외국통화를 거래대상으로 지정하였다. 1980년 7월 미달러화와 원화사이에 선물환거래가 도입된 이래 현재는 국제금융시장에서 時勢가 형성되는 모든 외국통화와 원화사이 또는 외국통화 상호간에 선물환거래가 인정되었다. 1987년 10월에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선물환 및 스왑거래 이외에 선물거래와 옵션 등의 금융선물거래가 허용되었다.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는 한국은행 및 은행감독원에서 제정한 외국환은행의 금융선물거래에 관한 회계처리규정과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의 선물환거래등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다.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例規(102-470)를 통해 선물환계약, 선도금리계약 및 스왑의 회계처리방법만을 예시하고 있을 뿐, 금융선물 및 옵션거래의 회계처리방법과 공시에 관한 규정은 없다.

(2) 금융선물 및 옵션거래의 해지기준

1) FASB와 AICPA의 해지기준

금융선물거래와 옵션거래가 해지거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FASB Statement No. 52는 통화선물계약을 포함한 先物換契約의 해지기준을 그리고 FASB Statement No. 80은 금융선물계약의 해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옵션거래의 공식기준은 현재 제정된 것이 없으므로, AICPA의 Issue Paper와 FASB의 Discussion Memorandum¹⁰⁾에서 제안한 내용을 참고로 해지기준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Contract,” The Journal of Accountancy(March 1985, AICPA), P 18

9) 大塙宗春, オプション取引會計基準研究委員會設置の背景および「報告書」の意義・スタンス, 企業會計, Vol. 44, No. 12, 1992, P. 17.

10) FASB, “An Analysis of Issues related to Recognition and Measurement of

	금융선물	옵션거래
해지기준	해지대상 항목이 기업을 가격 또는 이자율위험에 노출시키며, 선물계약이 그 위험을 감소시키고 해지로 지정되어야 한다. 해지거래의 계약시점 또는 해지기간동안에, 선물계약의 결과가 위험에 노출된 항목에 미치는 가격 또는 이자율변동 영향을 실질적으로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선물계약의 시장가치와 해지항목의 공정가치간에 또는 해지항목의 관련이자수입이나 이자비용의 변동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외화거래가 외화약정의 해지거래로 지정되고, 외화거래의 해지거래로 유효해야 하며, 외화약정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과 금융 선물계약의 해지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옵션 대상의 시가와 해지대상의 시가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매입옵션과 매도옵션의 해지기준은 동일하지만, 매도옵션의 해지회계는 수취한 옵션료의 범위까지만 인정된다.
해지대상	공정가치로 보고된 자산 부채, 보유 자산 부채, 확정계약 또는 예상거래의 가격 또는 이자율을 해지하는 거래	금융선물과 동일
상관관계의 평가	금융선물과 옵션거래 모두 상관관계의 합리적 추정치를 사용하여 평가한 결과 상관관계가 낮거나 부의 상관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지회계를 중단하고 해지금융상품의 가격변동액과 상계되지 않은 선물계약의 손익을 그 시점에서 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2) 韓國과 日本의 해지기준

미국의 FASB의 금융선물 해지규정과 AICPA의 의견서는 해지기준을 엄격히 정의하고 있으며, 일본의 선물·옵션거래 등의 회계기준에 관한 의견서에서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관련규정이나 회계기준에서는 선물거래의 해지기준에 대해 상세히 명시된 것은 없다.

다음의 내용은 우리 나라의 企業會計基準, 例規 및 外國換管理規程에 명기된 내용과 일본의 선물·옵션거래 등의 회계기준에 관한 의견서에서 제시된 해지기준을 비교한 것이다.

	일 본	한 국
	해지대상이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한편 해지 대상의 가격변동과 선물거래의 가격변동과의 사이에 밀접한 경제적 상관과 선물거래가 해지대상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해지대상이 현물인 경우 다음 두 가지 조건에서 각각	①미래 환율 또는 이자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기준)

Financial Instruments," Discussion Memorandum, (Stamford, Conn., November 1991).

<p>한 가지씩을 해지거래개시부터 종료시까지 충족시켜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테스트의 조건 <p>①해지거래로서 회사의 의사가 확정되어 있을 것 ②해지거래를 식별할 명확한 내부규정 또는 내부통제 조직이 존재하고, 이들에 의해 해지거래가 처리되고 있을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테스트의 조건 <p>①해지대상의 가격변동과 선물거래의 가격변동과의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 ②해지대상의 손익이 선물거래의 손익에 의해 상당히 상쇄되고 있을 것</p> <p>해지대상이 예약거래인 경우는 전술한 조건에 추가하여,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p> <p>①거래예정일, 매매예정대상, 매매예정량 등 예정거래의 주요 거래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②예정거래가 실행될 가능성성이 높아야 한다.</p>	<p>②외화자산 또는 부채의 환율·이자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외화차입비용의 절감 등을 위한 선물 및 옵션거래(외국환 관리규정)</p>
<p>해지대상</p> <p>미래의 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선물시장에서 현물포지션 또는 미이행확정계약 또는 예정거래와 반대의 포지션을 구성하는 거래</p>	<p>환율이나 이자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현재 보유중인 외화자산·부채와 미래에 나타날 예정거래 또는 확정거래</p>

4. 金融先物去來의 會計處理

(1) 회계처리의 일반원칙

1) 金融先物去來 契約日의 會計處理

금융선물거래의 契約締結時에는 계약자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금융선물을 계약시점에서 보면 未實行된 거래이며 반대매매 또는 精算日에 가서 그 계약이 이행되기 전까지는 對象商品의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정식 계정과목으로 대차대조표에 기재해서는 안된다는 APB No. 4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¹¹⁾

그러나 금융선물거래는 거래약정시 거래주문과 함께 반드시 거래보증을 위한 開始證據金(initial margin)을 거래소(clearing house)에 예탁하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에 預置金 또는 去來保證金(자산)으로 회계처리가 발생하며, 미국의 FASB나 일본의 기업회계심의회도 동일한 처리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선물거래와 관련된 거래수수료 등의 비용은 資產取得原價의 일부로 資本化하는 방법¹²⁾과 費用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화 방법과

11) AICPA, APB Opinion No. 4, "Accounting for the Investment Credit," 1970, Para 162참조.

12) Jan R Williams & Martin A. Miller, GAAP Guide 1993, HBJ Professional

비용처리 방법은 거래비용의 중요성과 선물계약의 자산인식방법에 따라야 하나, 해당기업의 선물거래손익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영업비용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수도 있다.

2) 先物去來 割增額 또는 割引額

선물계약의 割増額 또는 割引額(premium or discount)은 이자를 의미하며, 해지거래의 체결시에 해지대상의 先物價格과 公正價值의 차이로서 해지로 지정된 거래에 대해서는 이 차이를 선물계약과 별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만일 해지대상항목과 선물계약이 만기일까지 보유되고 또한 선물거래대상이 계약조건에 의해 인도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라면, 선물계약의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선물계약의 보유기간동안에 손익으로 상각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해지대상이 선물계약조건에 의해 인도될 수 없거나 또는 기업이 선물계약과 해지대상항목을 선물계약의 만기일까지 보유할 가능성이 없다면, 손익으로 처리해야 한다.¹³⁾

3) 市場價值變動損益의 認識

금융선물계약의 시장가치변동액의 손익인식기준으로는 日日精算基準(mark to market)과 決濟基準을 고려할 수 있다. 일일정산기준에 의하면 先物契約은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이기 때문에 매일 가격변동에 따라서 이익 또는 손실을 보면 가격변동에 따라 증거금의 결제가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¹⁴⁾ 반면에 決濟基準은 선물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時價差額을 當該先物去來의 결제시에 손익으로 인식하는 기준이다.

그러나 해지거래의 회계절차는 해지항목의 손익을 서로 다른 기간의 손익에 보고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즉, 해지대상과 해지항목이 現行時價와 原價로 다르게 측정될 수도 있으며, 해지항목의 경제적 손익(보유손익)이 동일기간에 발생하여 서로 상쇄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은 경제적 손익을 동일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배제할 수도 있다. 또한 해지항목의 정산시점이 다를 경우 정산된 항목의 손익이 다른 未精算된 항목의 손익을 상계하기 전에 보고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豫定去來의 해지는 아직 해지대상항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지항목의 손익은 해지대상항목의 손익과 동일기간에 상계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이연해지회계(deferred hedge accounting)를 사용하여 해지항목의 손익을 해지대상항목의 관련손익이 인식될 기간까지 移延한다.

사실상 移延法은 실현손익의 인식을 이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해지항목으로 이용된 선물계약은 일일결제가 되며, 이연해지회계에 의해 실현손익의 인식이 이연되므로 실현손익을 이연하는 것은 명백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연법과 일일정산법의 특징을 결합한 有效法(effectiveness method)을 적용하여 해지거래가 아니거나 해지거래를 초과한 범위의 손익은 당기에 반영하고, 해지거래의 손익은 해지대상항목의 관련손익이 인식될 때까지 이연한다.

Publishing, 1993, 28. 14.

13) Paul Munter, Donald K. Cancy and Tommy Moores, "Accounting for Futures Contract," The Journal of Accountancy, (March 1985, AICPA), P. 24.

14) James C. Van Horne, Financial Market Rates & Flows(Third Edition), Prentice-Hall Inc., 1990, P 154.

유효법에 의하면 현재 보유 중인 자산·부채의 헤지거래와 예정거래의 헤지거래에는 이연법을 적용하고, 일일정산법은 현재 보유 중인 자산·부채와 확정계약의 헤지거래에만 적용될 수 있다.¹⁵⁾ 따라서 헤지목적인 선물계약의 市場價值變動에 의한 미실현손익은 이연시키고, 선물거래의 장부금액(선물거래증거금)을 조정하여 이익으로 증가된 超過證據金은 現金引出이 가능하며, 반대로 손실인 경우는 維持證據金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물계약의 정산일에는 이연된 선물거래손익을 헤지대상항목의 보유기간동안에 직선법을 사용하여 손익으로 상각 또는 환입시킨다

일본의 선물·옵션거래 등의 회계기준에 관한 의견서에서는 선물손익의 인식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¹⁶⁾ ①선물거래에 일일정산기준이 적용되고, 헤지대상이 원가로 평가되고 있는 경우에는 헤지대상의 손익이 인식되기까지 선물거래에 대한 손익을 이연한다. ②선물거래에 決済基準이 적용되고, 헤지대상이 時價(또는 低價)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헤지대상에 대해서는 손익이 인식되지만, 선물거래에 대해서는 손익이 인식되지 않으므로 양자가 기간적으로 대응되지 않기 때문에, 양자의 손익을 동일기간에 인식하기 위해 헤지회계에서는 선물손익을 결제전에 인식한다 ③선물거래는 이미 결제되었으나, 헤지대상은 아직 손익이 인식되지 않은 경우에는 헤지대상의 손익이 인식되기까지 선물거래의 決済損益을 이연한다 ④先物去來가豫定去來의 헤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정거래가 이행되고 이 거래에 대해서 손익이 인식되기까지 선물손익을 이연한다. ⑤선물계약의 헤지손익이 헤지대상의 손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헤지대상의 장부가액에 가감(一體方式)하는 방법 또는 그 초과액을 헤지대상의 장부가액에 가감하지 않고, 자산항목 또는 부채항목으로 인식하여 이연하는 손익이 연방식(分離方式)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損益認識方法으로 決済基準의 결점은 결제시까지 선물거래손익이 인식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간손익을 조작할 수 있는 회계처리가 가능하며, 선물거래의 경제적 실태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4) 金融先物去來의 反對賣買 및 現物決済에 대한 會計處理

금융선물거래가 精算될 때는 결제사실을 備忘記錄하고, 선물거래증거금의 인출, 선물거래의 差金決済, 精算手數料 등의 처리를 행하며, 계약일부터 정산일까지 발생한 선물거래의 미실현손익을 선물거래손익으로 인식하거나 또는 이연된 미실현손익을 헤지대상항목의 보유기간동안 直線法에 의해 손익으로 상각 또는 환입한다 現物引渡에 의해 授受된 헤지상품의 결제가격은 최종정산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계상한다.¹⁷⁾

15) L Todd Johnson, Halsey G. Ballen and Victoria W. Kern, Hedge Accounting Is Deferral The Only Option; Journal of Accountancy, January 1994, PP 54-58.

16) 企業會計審議會, 「先物・オプション取引等の會計基準に関する意見書等について」, 第二部, “先物取引に係る會計處理に関する中間報告,” -2-(1), (2), 1990. 5. 29.

17) 企業會計審議會, 「先物・オプション取引等の會計基準に関する意見書等について」, 第二部, “先物取引に係る會計處理に関する中間報告,” 1990. 5. 29.

(2) 金融先物去來의 會計處理

금융선물거래의 회계처리대상은 保有資產 또는 負債, 確定契約 그리고豫定去來 등의 헤지 거래와 투기거래로 분류된다.

1) 公正價值로 보고된 항목의 헤지거래

기업이 헤지대상항목의 公正價值變動의 未實現額을 손익에 포함시킬 경우 관련선물계약의 시장가치변동은 그 변동이 발생한 시점의 손익에 인식되어야 하며, 取得豫定인 資產 또는 發生이豫定된 負債를 자산 취득 또는 부채발생 이후에 공정가치로 보고할 경우에도 그와 동일한 회계처리가 예정거래를 헤지하는 선물계약에도 적용되어야 할것이다.

자산을 공정가치로 보고하지만 자산을 매각 또는 처분하기까지 자산의 미실현가치변동액을 資本計定에 포함시키고 있는 기업도 있다. 이를 자산의 헤지로서 유효한 선물계약의 시장가치변동은 높은 相關關係가 지속되는 한 자산을 매각 또는 처분하기까지 자본계정에 포함시켜야 한다.¹⁸⁾

2) 保有資產 또는 負債와 確定契約이 존재하는 경우의 헤지거래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부채의 헤지로서 유효한 선물계약의 시장가치변동은 헤지대상항목의 帳簿價額(carrying amount)의 修正으로 인식하고, 確定契約(firm commitment)의 헤지에 해당하는 선물계약의 시장가치변동은 그 계약의 거래측정액에 포함시킨다.¹⁹⁾

다시말해, 헤지목적의 금융선물계약의 손익은 이를 당기의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헤지대상의 實物價格變動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여 헤지대상이 자산·부채인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수정하고 매매약정인 경우에는 해당거래금액에 포함시키지만, 물론 선물계약이 헤지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자부 금융상품을 헤지하기 위한 금융선물거래의 경우, 장부가액 또는 거래금액의 수정은 헤지대상항목의 수입이자 또는 지급이자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헤지대상항목의 잔존기간에 걸쳐 상각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²⁰⁾

3)豫定去來의 헤지거래

豫定去來(anticipated transaction)를 헤지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직 행해지지 않은 현금거래 또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기업이 예상은 하지만 의무가 없는 거래를 말하며, 그 거래가 FASB Statement No. 80, Para. 4에서 규정하고 있는 두 가지 조건외에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市場價值變動을 미래 발생할 거래금액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²¹⁾

⑦ 예정거래의 중요한 특징과 예정조건(예정거래일, 금융상품의 종류, 예정거래 등)을 확인

18) FASB, SFAS No. 80, Para. 5.

19) FASB, SFAS No. 80, Para. 6.

20) FASB, SFAS No. 80, Para. 7.

21) FASB, SFAS No. 80, Para. 9.

할 수 있을 것.

- ⑤ 예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예정거래의 발생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고려할 사항은 과거 유사한 거래의 빈도, 거래를 이행할 기업의 재무와 영업능력, 자원을 특정활동에 투입할 계약, 예정거래일까지의 기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의 손실 또는 영업 중단의 범위, 대체거래의 가능성 등을 고려).

예정된 자산의 취득 또는 부채의 발생을 헤지하는 목적의 선물계약의 회계처리는 이들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해서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방법과 일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손실이 예정거래를 매각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 그 損失範圍까지 예정거래와 관련있는 선물계약에 그 손실을 인식해야 한다 만일 헤지로서 회계처리되어온 선물계약이 예정거래일 이전에 처분될 경우, 그 선물계약의 가치의 累積變動額은 계속 이월시켜서 관련헤지의 측정액에 포함시켜야 한다²²⁾

예정거래에 대한 선물계약의 시장가치변동은 일일정산기준(mark to market)으로 평가하며 변동이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리고豫定來의 수량이 당초 계획된 수량보다 적은 경우 그에 상당하는 移延損益과 선물계약이 예상되지 않을 때 當該移延損益은 즉시 손익으로 인식한다²³⁾

4) 投機目的인 경우의 회계처리

기업이 선물계약을 投機手段으로 이용하는 것은 先物契約의 市場價值變動을 이용하여 거래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이므로 반대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을 입게된다. 이러한 행위의 결과는 선물계약이 행해지고 있는 기간의 손익에 즉시 반영시켜야 한다.²⁴⁾ 그것은 선물계약자체가 회계상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회계상 認識對象은 선물계약자체가 아니라 시장가치변동에 의한 경제적 효과이므로, 선물계약의 市場價值를 평가하여 발생한 손익은 先物去來證據金의 증가 또는 감소로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5. 금융옵션거래의 회계처리

(1) 금융옵션거래의 헤지회계

금융옵션의 헤지회계는 선물계약의 헤지회계와 거의 비슷하다 헤지목적의 옵션계약은 옵션 대상의 가격과 헤지대상가격간에 분명한 經濟的 相關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事後의 상관관계의 판정에 의해 높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헤지회계를 중지하고 投機去來로 처리해야 한다. 만일 옵션의 목적이 價格保護를 위한 것이고 또한 그렇게 확인된다면 옵션의 헤지회계처리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의도가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옵션료는 기본헤지대상이 없으므로 時價로 표시되어야 한다.²⁵⁾

22) FASB, SFAS No 80, Para 10

23) FASB, SFAS No. 80, Para. 9

24) FASB, SFAS No. 80, Para 3

25) Tidd E. Petzed, Financial Futures and Options, A Guide to Market Applications and Strategies, Quorum Books, 1989, P 205.

해지회계의 적용에 따라서는 해지의 有效性를 판정하는 대상으로 옵션료의 가격변동인가 또는 옵션대상의 가격변동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AICPA의 Issues Paper에서는 옵션대상의 가격과 해지대상의 가격과의 사이에 분명한 經濟的 相關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FASB의 연구보고서에서는 80%에서 125%의 범위로 상계가 행해진 경우에는 높은 相關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²⁶⁾

(2) 금융옵션거래의 회계처리

옵션에 관해 SFAS No. 12(*Accounting for Certain Marketable Securities*)는 固定價格 또는 確定價格으로 매입한 콜옵션의 권리와 매도한 풋옵션권리를 지분증권에 포함시키며, 이를 옵션은 시장가격이 원가보다 낮을 경우, 低價評價(LOCM)를 하고, 미실현손실은 발생기간의 순이익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⁷⁾ 그러나 이 기준은 투자, 증권, 보험회사 등의 특정산업의 지분증권의 회계처리에 관한 일부 규정에 불과하다.

AICPA의 issue paper는 옵션거래가 해지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資產, 負債 또는 確定契約의 해지로서 이용된 콜옵션과 풋옵션의 회계처리에 해지회계를 적용해야 하며, 옵션은 市場價格(market price)으로 기록되고, 場外市場에서 거래된 옵션도 거래소에서 거래된 옵션과 마찬가지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일반규칙중에는 몇 가지 예외조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① 풋옵션을 매도하고 수취한 옵션료의 범위까지만 해지회계의 자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② 해지회계는 해지되고 있는 對象이 原價로 기록된 자산일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²⁸⁾ 금융선물과 마찬가지로 자산, 부채 또는 확정계약의 해지회계의 적용은 옵션대상의 시가와 해지대상의 시가간에 지속적인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²⁹⁾

FASB의 Discussion Memorandum에서는 옵션을 포함한 금융상품의 회계처리대상에 관해 다섯 가지 기능적 분류를 하고 있다:³⁰⁾

- 대차대조표에 인식되어야 할 금융자산 또는 부채의 대상과 인식시점
- 금융자산과 부채, 이득과 손실, 그리고 기타 조건들의 재무제표 표시방법
- 금융자산과 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계약일 이후에 금융자산과 부채의 측정금액과 미실현손익의 보고방법
- 금융자산 또는 부채의 대차대조표에서 제거시점과 실현손익의 보고방법

1) 옵션계약일의 회계처리

옵션계약일에 옵션계약을 완전한 매매거래로 처리하여 옵션계약액을 자산과 부채로 인식할 것인가, 또는 옵션의 대가로 지급 또는 수취한 옵션료(option premium)만을 자산과 부채 또는 비용과 수익으로 인식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회계실무는 옵션의 매수자는 옵션행사권을 보유하므로 계약시에 지급

26) 小宮山 驪, 전계논문, P. 46.

27) FASB, SFAS No. 12, "Accounting for Certain Marketable Securities," December 31, 1975, Para. 7.

28) AICPA, Para. 4.

29) AICPA, Para. 290.

30) FASB, Discussion Memorandum, Para. 16.

한 옵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옵션매도자는 계약상품을 행사일 또는 그 이전에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권리행사가 되기까지 수취한 옵션료는 부채로 계상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³¹⁾ 거래소에서 거래된 옵션은 계약체결일에 去來擔保로서 所定의 옵션거래증거금을 예치해야 하는 데 보통 옵션매도자만이 예치하며, 자산으로 계상한다³²⁾

2) 옵션료의 회계처리

옵션계약의 對價로 지불한 금액인 옵션료(option premium)는 内在價值(intrinsic value)와 時間價值(time value)로 되어 있다. 콜옵션(call option)의 내재가치는 콜옵션이 ITM(in the money)에 있을 때의 가치, 즉 만기일의 시장가격이 옵션행사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풋옵션(put option)의 내재가치는 풋옵션이 ITM(in the money)에 있을 때의 가치, 즉 옵션의 행사가격이 옵션대상의 시장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이 된다. 옵션료의 다른 요소인 시간가치(time value)는 현재 옵션의 기본이 되는 상품에 대해 권리를 지불(행사가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상품의 시장가격이 변동할 시간이 있다는 사실에서 발생하는 가치이다. 옵션의 시간가치는 옵션가치에서 옵션의 내재가치를 차감하여 계산되며³³⁾, 기본상품의 가치와 무관하게 옵션기간에 걸쳐 감소하기 때문에 보험료(insurance cost)로서 간주된다

옵션의 시간가치를 더 상세히 분석하면 價格變動價值(volatility value)와 割引效果(discount effect: 화폐의 시간가치)로 분석될 수 있다. 할인효과는 옵션기간동안에 기본상품에 관한 예상배당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하여 옵션과 관련있는 잠재적 현금흐름의 순현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³⁴⁾

옵션료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해 issue paper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① 헤지회계에 적합한 매입옵션의 시간가치와 내재가치는 헤지대상이 시가로 기록되든, 않든간에 옵션의 내재가치변동이 자본의 별도계정으로 처리될 경우는 분리하며, 헤지대상이 시가로 기록되고, 내재가치 변동이 손익으로 처리될 경우는 분리하지 않는다.

② 헤지회계에 적합한 매도옵션의 시간가치와 내재가치는 헤지대상이 시가로 기록되든, 않든간에 분리하지 않는다 헤지목적의 옵션매도는 손익을 옵션기간에 인식하지 않고 이연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③ 헤지회계에 적합한 옵션이 시간가치와 내재가치로 분리되고, 헤지대상이 시가로 기록되지 않고 옵션의 내재가치변동을 별도의 자본계정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시간가치를 옵션기간에 걸쳐 直線償却 한다 그러나 헤지대상이 시가로 기록되고 내재가치변동을 손익으로 처리할 경우는, 시간가치를 時價로 표시해야 한다.

④ 헤지회계에 적합한 옵션을 정산할 때 순시간가치의 손익은 ⑦헤지회계에 적합한 옵션이 정산되고, ⑧그 옵션의 시간가치가 체계적, 합리적 방법에 의해 상각되고, ⑨옵션을 정산할 때에 수취 또는 지불한 시간가치가 그것의 未償却殘額과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액은 옵션이 정산되는 시점에서 손익으로 인식한다.

⑤ 확정계약 또는 예정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생긴 시간가치의 변동은 ⑦자산과 부채를 헤지

31) 高橋善一郎 監修, 太和監査法人, 財務リイスク メネジメント, 爲替 金利 先物 新金融商品取引と會計, 中央經濟社, 1992, P. 277

32) 한국은행외환관리부, 은행계정과목해설, 1988. 11

33) FASB, Discussion Memorandum, Para. 3. 20

34) FASB, Discussion Memorandum, Para. 3. 21

할 옵션의 시간가치와 내재가치가 분리될 경우, ⑤이들 옵션의 시간가치의 상각 또는 시가의 변동이 손익에 인식될 경우, ⑥해지회계가 확정계약 또는 예정거래를 해지할 옵션의 내재가치에 적용될 경우에 거래측정액에 포함될 수 있다.

⑥ 내재가치의 변동이 별도 자본계정에 포함될 경우, 시간가치의 상각 또는 시가의 변동은 손익에 포함시킨다.

한편, 日本公認會計士協會에 의해 발표된 會計制度委員會研究報告書 제4호에는 은행이외의一般事業會社가 통화옵션을 매입하였을 경우의 옵션료의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³⁵⁾

- ① 옵션료는 契約締結日에 内在價值와 時間價值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 ② 時間價值는 先給費用에 계상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행사기일까지의 기간에 배분 한다.
결산일까지 권리행사를 하였지만 잔액이 남았거나, 결산일에 内在價值가 零일 때는 時間價值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 ③ 區分計算法을 적용할 경우, 内在價值는 계약체결일에 권리를 나타내는 과목으로 자산에 계상하고, 결산일까지 權利行使가 된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계상한다.
- ④ 거래은행에 옵션을 매도하여 이익이 있는 경우 차액을 外換差益으로 계상하고, 자산으로 계상되고 있는 옵션료를 外換差損으로 계상한다
- ⑤ 통화옵션을 이용한 金融商品은 그 계약속에 옵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옵션료의 區分計算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결산일의 환산에 時價를 적용한다.

옵션계약일 이후의 측정에서 매수 또는 매도한 옵션의 장부금액이 역사적 가격에 의해 측정될 경우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최초 장부금액의 상각과 손실인식문제로서 FASB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직선법을 적용하여 옵션기간에 걸쳐 상각을 하며, 현행가격에 의해 측정을 할 경우는 시장가격에 의하고, 만일 매매가 없거나 매매가 적은 상품에 대해서는 시장가치의 주관적 결정과 추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³⁶⁾

금융옵션의 손실인식과 관련해서 옵션매도자의 의무는 잠재적으로 무한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의 불리한 변화는 옵션매도자의 부채를 고가(higher-of-proceeds-or-market-value: HIPOM)로 측정하게 되므로 불리한 시장가격변동효과를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옵션 매수자는 옵션매도자의 신용가치의 감소로 잠재적 신용손실에 노출되므로 매수옵션의 시장가치의 모든 감소를 인식하는 저가(lower-of-cost-or-market-value: LOCOM)로 평가하는 대안은 보수적이므로 대체로 지지를 받는 평가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³⁷⁾

그리고 옵션료의 평가차액은 옵션의 시장가격과 계약가격의 차액이지만, 평가차액의 인식시점에 대해서는 옵션거래가 투기목적인가 또는 해지목적인가에 따라 처리가 다르다 AICPA의 Issue Paper는 투기목적의 옵션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미실현평가손익을 즉시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지만, 해지목적인 옵션거래의 평가손익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① 시가법으로 평가되고 있는 자산·부채를 해지하기 위해 옵션을 구입한 경우는 옵션료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해지대상 자산·부채의 평가손익과 상계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를 분리해서 처리하지 않는다. 옵션이 매각된 경우에 평가손익은 실현손익으로 해서 손익계산서에 인식된다

② 저가법으로 평가되고 보유자산을 해지하기 위해 옵션을 구입한 경우 옵션료의 평가익은 실현이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자산원가와 옵션평가손실의 합계액이 자산미실현가격을

35) 新井清光, 白鳥庄之助, 「先物・オプション取引等」, 會計基準詳解, 中央經濟社, 1990, 參조.

36) FASB, Discussion Memorandum, Paras. 3.62, 67, 74, 76.

37) FASB, Discussion Memorandum, Paras. 3.84, 3.86.

초과하는 경우에는 충당금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를 분리회계처리하고 있는 경우는 내재가치를 평가대상으로 하고 시간가치는 옵션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의해 상각해야 하지만, 옵션이 매각된 경우는 관련 손익을 즉시 인식한다. 내재가치가 이익으로 인식된 경우는 헤지대상자산은 평가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이익을 계상하고, 반면에 내재가치가 손실로 인식되는 경우는 헤지대상은 미실현이익이 인식되기 때문에 그 손실을 이연한다

③ 확정계약을 헤지할 목적으로 옵션을 구입한 경우 옵션료의 평가손익과 옵션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은 확정계약이 실행되기까지 이연한다. 그러나 확정거래에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손실은 인식해야 한다.

④ 손익인식이 이연되어온 예정거래의 헤지로서 회계처리된 옵션이 예정거래가 발생하기전에 정산될 경우, 옵션의 누적손익은 예정거래의 측정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예정거래금액이 처음 옵션에 의해 헤지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이후의 예정거래의 측정액에 포함될 옵션의 누적손익 중 일정비율을 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3) 옵션계약의 정산

금융옵션계약이 만기, 매각 혹은 이전, 취소 또는 행사의 결과로서 정산될 경우 전에 인식한 옵션자산 또는 부채는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고, 회계처리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³⁸⁾

① 만기옵션

만기옵션이 ATM 또는 OTM(at-or-out-of-the-money)상태에 있고 옵션이 현행시장가치로 측정되는 경우는 옵션의 장부가액은 0이 될 것이므로, 제거는 복잡하지 않다. 그러나 ITM(in-the-money)상태의 옵션이 행사될 경우 옵션매수자는 옵션장부가액을 손실(비용)로, 옵션매도자는 이익(수익)으로 인식한다. 역사적 원가로 기록된 옵션은 만기일에 옵션매수자와 매도자는 각각 옵션의 장부가액을 손실과 이익으로 인식한다

② 옵션의 매각 또는 이전

현행시장가치(또는 역사적 원가)로 측정된 옵션의 자산 또는 부채를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고, 매각 또는 이전으로 수취한 자산, 부채 및 비용을 동시에 인식한다. 옵션의 장부가액과 옵션으로 지급 또는 수취한 금액과의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이는 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상호약정 또는 법적 조치에 의한 옵션계약의 취소는 이전 또는 매각의 경우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

④ 행사에 의한 제거

옵션이 행사될 경우, 콜옵션매수자와 풋옵션매도자는 기본상품을 수취하고 행사가격을 지급하며, 수취한 금융상품을 인식한다. 반대로 콜옵션매도자와 풋옵션매수자는 수취한 행사가격을 계상하고 인도한 기본상품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한다. 그리고 옵션료로 수수한 콜옵션매수자의 자산 또는 풋옵션매도자의 부채는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여 손익으로 인식한다.

옵션 행사에 의한 제거로 새로 취득한 금융상품의 최초 측정가격에 대해 FASB의 Discussion Memorandum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³⁹⁾

38) FASB, Discussion Memorandum, Paras. 3 115, 126 참조.

39) FASB, Discussion Memorandum, Paras. 3 139, 150 참조.

- a. 지급한 행사가격으로 인식·측정.
- b. 콜옵션매수자는 행사가격에 옵션의 전체장부가액을 가산한 가격 그리고 풋옵션매도자는 행사가격에서 옵션의 전체장부가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측정.
- c. 콜옵션매수자는 행사가격에 옵션의 현행내재가치를 가산한 가격으로 측정하고 옵션의 잔여장부가액을 손실(비용)으로 인식 그리고 풋옵션매도자는 행사가격에서 내재가치를 차감한 가격으로 측정.
- d. 콜옵션매수자는 행사가격에 옵션의 최초 장부가액을 가산한 가격으로 측정하고 옵션의 최초의 가치와 현행시장가치와의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 그리고 풋옵션매도자는 행사가격에 옵션의 최초 장부가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측정.
- e. 옵션매수자는 행사가격에 옵션의 최초 내재가치를 가산한 가격으로 측정하고 옵션의 잔여장부가액(즉, 옵션의 할인효과, 옵션의 volatility value, 옵션의 최초 내재가치와 현행내재가치와의 차이)을 손익으로 인식 그리고 풋옵션매도자는 행사가격에서 옵션의 최초의 내재가치를 차감한 가격으로 측정.

(5) 금융선물 및 옵션거래의 재무정보 공시

재무제표상의 適正公示는 특히 目的適合性, 中立性 그리고 理解可能性의 제목적과 관련되어 있다. 재무정보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므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되어 공시하는 것이 基本目的이기 때문에, 특히 재무제표상의 적정공시는 앞에서 열거한 제목적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은 미실행된 약정계약의 경우 미래에 환계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계약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정식으로 계정과목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선물계약은 그 계약시점에서 보면 미실행계약이기 때문에 계정처리능력이 있는 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비망적 기록을 하고 이 비망적 기록을 토대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결론이 없는 상태이다.⁴⁰⁾

그러나 기업은 선물·옵션거래 등 다양한 금융상품거래를 이용하여 이득을 얻는 한편, 가격 또는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기회가 늘어가고, 이러한 이득 및 위험에 관련된 재무정보가 대부분 대차대조표부외(off-balance)로 처리되기 때문에 투자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거래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회계정보이용자들은 기업이 換率 또는 利子率變動危險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으며, 환율 또는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영향이 企業損益에 미치는豫想效果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선물거래의 종류에 따라 투자나 투기거래일 수도 있고, 또는 자산·부채 및 확정계약에 대한 혜지거래일 수도 있다. 따라서 혜지로 회계처리될 선물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혜지 대상인 資產·負債 및 確定契約 또는豫定去來의 성격과 선물계약의 회계처리방법을 공시해야 한다. 회계처리방법을 공시할 때는 선물계약의 가치변동을 손익으로 인식하게 되는 사건(events) 또는 거래의 개요를 공시⁴¹⁾할 필요가 있다.

또한 FASB Statement No. 105의 규정은 선물계약이簿外危險(off-balance-sheet risk)을 발생시킬 경우에는 會計方針(선물계약의 회계처리와 선물계약의 가격변동손익을 인식

40) Konrad W. Kubin,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for International Business Operating: International Accounting, 1984, PP.55-56 참조.

41) FASB Statement No. 80, Para. 12.

할 거래 또는 사건의 내용), 선물계약의 성격과 조건, 액면액, 계약액 또는 명목금액, 선물계약에 의해 헤지된 자산·부채, 확정계약 및 예정거래의 성격, 현금흐름, 가격변동위험 등의 내용을 註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²⁾

일본의 현행 실무상 선물거래의 미결제 계약액은 대차대조표에 표시되지 않으며, 선물·옵션거래에 관계되는 손익은 결제기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선물 옵션거래가 기업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당해거래가 결제되기까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은 기말에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거래만을 결제하고,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거래를 미결제상태로 남겨두는 자의적인 거래를 행하여 기간손익을 조작할 여지가 있으므로 결산시 선물거래에 대한 미결제 계약액 및 옵션의 대차대조표가액의 표시와 각각에 대응하는 시가 및 차손익을 재무제표에 대한 주기로서 공시하여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된 선물 옵션거래와 관련있는 시가정보의 공시기준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⁴³⁾

항 목	금융선물거래	옵션거래
공시대상	국내외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자기가 위험을 부담하는 선물거래	국내외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자기가 위험을 부담하는 금융옵션거래
공시항목	결산시의 미결제계약액 선물거래의 시가 및 차손익	결산시의 옵션의 대차대조표 가액, 옵션의 시가 및 차손익
공시방법	선물거래대상의 종류별, 매도약정·매수약정별 미결제액과 시가와의 차액(차익과 차손을 상쇄한 순액)	옵션대상의 종류별, 매도약정·매수약정별, 매수콜옵션 또는 매도풋옵션별 옵션의 대차대조표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중요성	종류별로 중요성이 적은 것은 일괄 기재	좌 동
옵션의 대차대조표가액	—	매도·매수시에 수수되는 옵션료는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계상
시가 및 시가의 산정	시가는 결산일의 종가(종가가 없는 경우는 직전가격으로 하고, 시가의 산정가에는 위탁수수료 등의 비용은 제외) 외화선물 및 외화옵션거래의 환산은 결산일의 현물가격 적용	
차손익*	미결제계약액과 시가와의 차액 (순액표시)	옵션의 대차대조표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총액표시)
공시장소	재무제표 및 중간재무제표에 주기	

* 意見書는 선물거래의 차손익의 기재는 總額表示가 아니라 선물계약 각각의 時價差額인 純額으로 표시하고, 옵션거래는 매도와 매수별로 위험상황 등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總額表示를 하도록 하고 있다

42) FASB,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Disclosure of

6. 우리나라의 회계처리

우리나라는 1968년 7월 外國換管理規程에 처음으로 先物換制度가 명시되고, 1978년 2월 모든 外國通貨가 거래대상이 되었으며, 1980년 7월 미달러화와 원화사이에 선물환거래가 도입된 이래 현재는 國際金融市場에서 時勢가 형성되는 모든 외국통화와 원화사이 또는 외국통화 상호간에 先物換去來가 인정되었다. 1987년 10월에는 換率變動에 따른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外國換管理規程을 개정하여 선물환 및 스왑거래 이외에 선물거래와 옵션 등 새로운 방식의 금융선물거래가 허용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환율변동에 따른 해지수단으로서 이들 金融先物技法의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또한 금융시장의 개방화 및 자본시장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기업은 원화표시 유가증권을 해외에서 발행함은 물론, 외국통화로 표시된 유가증권을 국내외에서 발행할 경우, 예상되는 換率 및 利子率변동의 위험을 해지할 금융선물기법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는 韓國銀行 및 銀行監督院에서 제정한 금융기관의 금융선물거래에 관한 회계처리규정과 證券管理委員會에서 제정한 先物換去來等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상의 관련규정과 예규가 있다.

(1) 회계처리규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선물환, 스왑, 선물, 옵션거래 등에 대해 회계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기준은 선물환계약 및 스왑거래의 회계처리만을 예규로 다루고 있고 선물 및 옵션거래의 회계처리방법은 환경변화에 대응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현재의 외환제도하에서 금융선물 및 옵션거래를 이용할 경우 先物換等의 會計處理例規로는 회계처리상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企業會計例規(102-470)는 기준 제 10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회피목적의 선물환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선물환거래등의 거래목적을 關聯資產·負債 및 未來豫定去來의 환율 또는 이자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해지거래와 관련자산·부채의 포지션(position)과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거래의 손익인식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기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외국환관리규정은 金融先物去來의 범위를 거래의 명칭·방법 및 형태에 불구하고, 금융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융선물거래와 거래의 목적 및 성격이 동일한 場外金融先物은 동일한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외금융선물거래에 대해서도 동일한 회계처리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⁴⁴⁾

다음은 기업회계기준의 예규와 금융기관회계처리기준을 비교한 것이다

Information about Financial Instruments with Off-Balance-Sheet Risk and Financial Instruments with Concentrations of Credit Risk."(Stamford, Conn., 1990), Para. 17

43) 新井清光, 白鳥庄之助, 「先物・オフ^{ショ}ン取引等」, 會計基準詳解, 中央經濟社, 1990, P.37.

村山德五郎 監修, 中 敏雄, 鈴木 豊 編, 制度會計·法會計의 實務, 中央經濟社, 1992, 참조.

44) 은행감독원, "금융기관회계처리기준," 「은행감독원규정·통첩집」, 1993. 5. 증권관리위원회,

"선물환거래등의 회계처리," 기업회계예규(102-470), 1992 7. 24.

	기업회계기준-예규	금융기관회계처리
대상	선물환, 선도금리 및 스왑계약	선물환과 통화, 이자율선물 및 옵션, 스왑거래
계약 체결시	계약체결시 관련자산·부채를 약정환율로 계상하고, 계약시점의 현물환율과의 차액은 선물거래차(대)로 계상하며, 관련자산·부채의 평가계정으로 계약기간 동안 균등상각(환입)	계약가액을 약정환율로 환산하고, 대차 대조표 난외의 각주사항으로 표시, 헤지 목적의 장기선물환, 통화선물계약의 관련외화자산·부채를 약정환율로 평가하고 계약시점의 현물환율과의 차액은 외환선물 거래차(대)로 계상하여 계약기간 동안 균등상각(환입)
증거금		기타예치금(자산) 또는 수입보증금(부채)계정에 계상
옵션 프리 미엄		지급(수취)시 선급비용(선수수익)으로 계상한 후 결산시 계약기간 경과분을 당해회계년도 손익으로 인식
예정 거래	계약체결일에 계약내용을 비망기록하고 계약실행일에 발생하는 정산차액을 관련자산·부채(이연선물거래손익) 또는 수익·비용(선물거래손익)에 가감하여 처리	
결산일	선물환계약을 외화로 약정한 경우 결산일의 환율로 환산하여 환산손익으로 계상	계약가액은 각주사항이므로 원화평가조정에 따른 환산차액은 기간손익에 미산입
손익 인식 기준	헤지목적이 아닌 계약의 관련자산·부채는 결산일의 환율로 환산하여 환산손익을 계상하고, 당해 계약에 의해 미래 수취 또는 지급할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그 손익의 순효과를 선물거래손익과 선물거래조정계정(관련자산·부채의 평가계정)으로 계상. 헤지목적의 선도금리 및 스왑계약 체결시 관련채권·채무에 대한 수입이자 또는 지급이자는 약정이자율로 계상. 헤지목적이 아닌 계약의 관련채권 채무에 대한 수입이자 지급이자는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하고, 계약에 의해 수취 또는 지급하는 이자를 상계한 후 순잔액을 선물거래손익으로 계상.	계약실행일 또는 정산일에 발생하는 매매차액 또는 정산차액만 당해 년도 손익으로 계상. 금융선물거래의 이자지급일과 수취일이 다른 경우 정산일 도래전에 지급(수취)한 이자는 정산일 도래시까지 선급비용(선수수익)으로 계상.

(2) 재무제표의 공시

금융선물 및 옵션거래는 미래의 환율 및 이자율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관련자산·부채의 헤지거래 또는 투기거래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가격변동이 예상과 다를 경우 기

업은 손실을 입게 되지만, 이들 손익은 대부분 결제시까지 이연되어 薄外危險(off-balance-sheet risk)으로 존재하게 된다.

기준 제103조의 3에서는 기업이 선물계약에서 정한 환율 또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公示方法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 예규(102-470)에서는 선도계약과 스왑계약의 체결시에 계약내용을 備忘記錄하고 결산일에는 선물계약의 내용 및 선물거래손익만을 註釋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회계처리기준과 회계처리방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물거래의 복잡함과 다양성에 비추어 볼 때, 근거규정과 예규만으로는 금융선물 및 옵션거래의 회계처리와 공시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3) 기업회계기준상의 고려사항

선물환거래는 거래목적과 거래 및 결제방법에서 금융선물거래나 옵션거래와 차이가 있으며, 거래유형 및 해지방법에서도 선물환거래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미국의 FASB도 선물계약에 관한 회계기준만 제정되었고 옵션에 관한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80년대 후반부터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로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와 금융의 국제화가 진전되고, 주요 외국의 금융시장간의 연계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들로 하여금 해외증권발행의 증가, 무역증대에 따른 무역신용의 증가, 시설투자에 따른 상업차관의 수요증가 또는 해외시장의 진입을 위한 직접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기업의 해외자본이동의 증가는 금리와 환율 등의 급변에 따른 영향을 직접 받게 되어 그로 인한 환위험을 입게 될 것이고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위한 금융선물 및 옵션거래의 새로운 기법의 활용이 필요해질 것이다.

기업의 적절한 환위험 관리가 수익성 확보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는 기업들의 환차손 규모를 살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1993년 1년 동안 제조기업은 5천8백6억원의 환차익을 올린 반면 환차손은 1조1천6백58억원에 이르러 순환차손이 5천8백52억원이나 됐으며, 이것은 1992년의 3천5백10억원보다 66.7%가 증가한 것으로 제조기업들의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⁴⁵⁾

대외자본거래가 많은 금융기관 및 대기업들이 규모는 적지만 해외금융선물시장에서 선물거래를 하고 있으며, 외국환은행과 국내기업의 선물환거래 및 금융선물거래 실적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⁴⁶⁾ 그리고 1996년까지 국내의 통화 및 금리선물시장의 개설과 주가지수선물거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금융선물 및 옵션거래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계처리문제가 일부 기업에만 해당되겠지만, 점차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해지목적과 환차익을 얻기 위한 투기목적의 거래가 증가하고, 외국의 거래 기법들의 도입과 더불어 회계처리는 당면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45)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1993, 1994.

46) 한국은행, '94. 1/4분기중 파생금융상품거래 동향, 1994.

선물환·금융선물 거래실적 추이 (단위 : 억달러)

		1991	1992	1993	1994 1/4
선물환 · 스왑 거래실 적	대고객거래	520.0	596.0	565.0	129.0
	은행간거래	763.0	1,053.0	2,223.0	862.0
	총 계	1,283.0	1,649.0	2,788.0	991.0
금융선 물거래 실적	대고객주선거래	41.9	21.5	8.4	13.6
	은행자체거래	176.0	137.2	152.6	65.9
	총 계	217.9	158.7	161.0	79.5

7. 결 론

금융선물 및 옵션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보면 기본적인 문제는 ①헤지(hedge)목적과 투기목적의 선물거래의 구분과 회계처리방법, ②金融先物契約의 貸借對照表上에 資產 또는 負債의 認識方法, ③금융선물계약에서 발생하는 損益의 認識方法, ④金融先物契約의 財務諸表上公示에 관한 내용 등으로 요약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선물 및 옵션거래가 미확정거래라는 점에서 최근까지도 보편적인 회계처리방법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금융선물 및 옵션거래가 뒤늦게 정착되고 거래의 다양성과 難解함으로 인해 실무적으로 이를 따라갈 수 있는 회계처리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金融先物市場을 개설하고 1996년에는 株價指數先物制度 도입을 앞두고 기업들은 금융선물거래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해외선물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종래의 外國換管理法의 규제도 대폭 완화되어 앞으로 기업들의 금융선물의 활용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원화가 국제간 결제통화로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역 및 자본거래에서 사용되는 통화가 달러화, 엔화, 마르크화 또는 유럽단일통화로 확대될 경우, 앞으로 환율 및 이자율위험이 수반되는 금융상품의 헤징거래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회계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준거해야 할 원리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규제보다는 지도로서 그리고 기업의 경제적 현실을 올바르게 표현하게 함으로써 재무제표가 유용성을 갖도록 선도할 책임이 있다. 최근들어 국내기업들의 국제금융시장의 관심도가 높아가고 금융선물을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추세에 있을지라도 국내선물시장이 아직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거래유형별 세부적인 회계규정을 제정하기보다는 먼저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선도계약 및 스왑거래의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 선물환계약은 기업들의 이용실적이 적다 할지라도 오랜 시간 국내금융시장에서 선물거래로 활용되어 왔으며, 금융선물 및 옵션거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둘째는 금융선물 및 옵션거래의 성격을 헤지목적과 투기목적으로 구분하고 헤지회계적용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국내금융선물시장이 개설되어 기업의 헤지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증가시켜 줄 투기거래가 병행되어야 한다.

세계는 금융선물 및 옵션거래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의 거래인식 및 측정방법 그리고 미국, 일본의 거래유형별 회계처리방법의 사례를 검토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선물 및 옵션거래의 해지대상에는 증권, 통화, 금리 등의 여러 가지가 있다. 현행기준은 유가증권평가에는 저가법을, 외화자산·부채환산에는 현행환율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금융선물 및 옵션의 평가는 해지대상의 평가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즉, 해지대상과 선물계약의 손익이 반대로 계상되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어 해지효과가 손익에 반영될 수 있다. 또한 손익인식기준으로서 差損益을 손익으로 계상할 것인가 또는 이연처리할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SFAS No. 80은 해지대상이 時價로 평가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물손익의 이연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저가법에 의한 평가는 보수주의 원칙에서 선호되지만, 미실현이익의 손익계상은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세계는 재무제표상에 선물거래에 관한 공시요건을 강화하여 미래 선물거래로 인해 기업의 財務狀態 및 經營成果에 미칠 영향을 정보이용자들에게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재무제표공시사항으로는 금융선물 및 옵션거래의 계약유형 및 회계처리방법, 계약금액, 손익인식기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계약으로 인한 실현손익과 미실현손익 등에 관한 것이다. 금융선물 및 옵션거래의 유형은 금융선물과 옵션거래의 종류와 거래대상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 부채, 예정거래의 환율 및 이자율변동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거래인가 또는 투기목적의 거래인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기업회계기준은 금융선물거래의 이론적 제도적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와 거래유형별 충분한 사례연구를 통해 금융선물 및 옵션거래의 회계처리지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姜鎬上, 國제금융시장론, 법문사, 1990.
- 金環林, 國제금융 및 자금관리론, 법문사, 1986.
- 朴鐘植, 國제經濟學, 무역경영사, 1986.
- 「은행감독원규정 통첩집」, 회계처리규정, 은행감독원, 1993. 5.
- 이 선 공저, 금융선물과 옵션시장의 활용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88. 10
- 재무부, 외국환관리규정, 1992. 8. 20 개정.
- 證券監督院, 改正企業會計基準 解說, 통권 제156호, 1990.
- 증권관리위원회, 기업회계예규(84-470), "선물환등의 회계처리," 1988. 4. 1.
- 증권관리위원회, 기업회계예규(102-470), "선물환거래등의 회계처리," 1992. 7. 24.
- 한국금융연수원, 외환회계, 1991.
- 한국은행, 금융선물거래의 관련회계처리기준(감경. 9141-383), 1988 11
- 한국은행, '94. 1/4분기중 파생금융상품거래 동향, 1994.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1993, 1994.
- 한국은행외환관리부, 은행계정과목해설, 1988. 11.
- 高橋善一郎 監修, 太和監查法人, 財務リスク メネジメント, 爲替 金利 先物 新金融商品取引と會計, 中央經濟社, 1992.

- 企業會計審議會, 「先物・オプション取引等の會計基準に関する意見書等について」, “先物取引に
係る會計處理に関する中間報告,” 1990 5 29.
- 小宮山 賢, オプション取引のヘッジ"會計, 企業會計, Vol. 44, No. 12, 1992.
- 新井清光, 白鳥庄之助, 先物・オプション取引等の會計基準詳解, 中央經濟社, 1990
- 伊藤 真, 外貨換算會計の實務, 中央經濟社, 1990.
- 宇南山英夫, 企業會計原則精解, 中央經濟社, 1983.
- 村山徳五郎 監修, 中 敬雄, 鈴木 豊 編, 制度會計・法會計の 實務, 中央經濟社, 1992
- 大塙宗春, オプション取引會計基準研究委員會設置の背景および「報告書」の意義・スタンス, 企
業會計, Vol. 44, No. 12, 1992.
- AICPA, APB Opinion, No 4, "Accounting for the Investment Credit," 1970.
- AICPA, Issues Paper, "Accounting for Options," (March 1986, AICPA).
- C Stevenson Rowley, "Implications of SFAS 80 to Grain Merchandising," The
Journal of Accountancy(October 1985, AICPA).
- FASB, "An Analysis of Issues related to Recognition and Measurement of
Financial Instruments," Discussion Memorandum, (Stamford, Conn.,
November 1991).
- FASB,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12, "Accounting for
Certain Marketable Securities," (Stamford, Conn., 1975).
- FASB,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52,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Stamford, Conn., FASB, 1981).
- FASB,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80, "Accounting for
Futures Contracts," (Stamford, Conn., FASB, 1984)
- FASB,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Disclosure of
Information about Financial Instruments with Off-Balance-Sheet Risk and
Financial Instruments with Concentrations of Credit Risk," (Stamford,
Conn., 1990).
- FASB, Current Text. Accounting Standards as of June 1, 1991, Vol. 1,
General Standards, (FASB, June 1991).
- Jan R. Williams & Martin A. Miller, GAAP Guide 1993, HBJ Professional
Publishing, 1993.
- Konald W. Kubin,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for International
Business Operating : International Accounting, 1984.
- L Todd Johnson, Halsey G. Ballen and Victoria W Kern, Hedge Accounting
: Is Deferral The Only Option; Journal of Accountancy, January 1994
- Paul Munter, Donald K. Cancy and Tommy Moores, "Accounting for Futures
Contract," The Journal of Accountancy(March 1985, AICPA)
- Steven C Blank, Colin A. Carter and Brian H. Schmiesing, Futures and
Options Markets, Trading in Commodities and Financial(Prentice Hall Inc.,
1991
- Todd E Petzed, Financial Futures and Options, A Guide to Market
Applications and Strategies, Quorum Books, 1989.